

##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47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9. 3. 23  
발 의 자 : 박남오의원의외6인

### 1. 주문

-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### 2. 제안이유

- 의회 예산집행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해
-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
-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위원의 정수는 7인으로 구성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지방자치법 제36조
- 나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

## 예산집행진상조사계획서

### 1. 조사의 목적

- 일부 언론에 보도된 「영등포구의회 '98예산집행 부적정 건」 내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막아, 예산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.

### 2. 조사기간

- 1999년 3월 29일 ~ 4월 7일 (10일간)  
※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현지확인, 서류제출요구, 관계공무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출석요구는 본 계획서에 의거 기 요구한 것으로 하며, 조사일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# 3. 조사대상 및 사안의 범위

- 의회사무국
- 제6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
- 의정운영 공동업무추진비중 '98년도 제6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

4. 조사방법

- 조사와 관련된 업무 관련 공무원의 보고 청취
- 제6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위보고 청취
- 질문답변
- 현장 및 서류확인

5. 조사반 편성

- 조사 총괄 :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

(가나다순)

위원장	간 사	조사위원	전문위원	사무보조직원
안 주 영	이 중 환	강 두 석 배 기 한 손 병 옥 신 길 철 조 길 형	유 재 한	조 일 연 구 기 모 노 병 훈

※ 협조부서 :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

6. 조사일정

일 시	조사대상	장 소	조 사 사 항	비고
'99. 3.29(월)	의 회 사 무 국	제1소회의실	· 조사대상 업무현황 보고청취 · 질문답변 · 서류 확인	
'99. 3.31(수)	손 영 상 의 원	제1소회의실	· 증인 출석	
'99. 4. 1(목)	제6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	제1소회의실	· 경위 설명 · 질문답변	
'99. 4. 2(금) ~ '99. 4. 3(토)	관 련 공 무 원	제1소회의실	· 증인 출석	
'99. 4. 4(일) '99. 4. 5(월)	공 휴 일			
'99. 4. 6(화)		제1소회의실	· 강평	
'99. 4. 7(수)		제1소회의실	· 조사결과보고서 작성	

# 조사결과보고서

=====

· 수신 :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장

조사대상 업무명	지적사항	문제점	개선요구사항

1999년 월 일  
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 
위원 (인)